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인권 인식에 관한 탐색적 고찰*

심혜인** · 홍송이***

〈요 약〉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의 인권 문제는 주로 시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노인 인구와 노인재가서비스 이용의 증가하는 추세와, 건강한 노인의 증가와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문화의 확산, 이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 강조 등의 변화로 인해 향후 재가 서비스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가서비스에서의 노인인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보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사자의 노인인권 피해 또는 학대를 목격했을 때의 대응태도에 영향요인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는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노인인권 인식을 잠재프로파일(LPA)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노인 인권 피해 또는 학대 신고 태도에 미치는지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7년에 조사한 주간·야간, 단기보호 서비스 시설장과 시설직원을 조사한 11,527개의 자료와 2019년에 조사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시설장과 시설직원을 조사한 1,428개의 자료를 SPSS 25.0ver.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권인식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Mplus 7.0ver.을 활용하여 집단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재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노인인권, 학대받지 않을 권리, 노인학대, 대응태도, 재가서비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1040)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 론

I. 서 론

2000년 독거노인의 비율은 16.0%였으며, 2019년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은 19.5%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19). 자녀와 동거하지 않거나 1인 가구 노인이 증가하는 것은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2020) '사회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돌봄 주체에 대하여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8년에는 40.7%에서 2020년에는 22.0%로 18.7% 낮아졌다.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2008년에는 11.9%였으나, 2018년 19.4%로 7.5%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008년과 1.0% 비슷한 12.9%가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2008년 43.6%에서 2018년에는 48.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2020년에는 61.6%로 13.3%로 높은 수치를 볼 수 있다.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노인 스스로 부양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 본인 스스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 희망하는 거주형태를 조사한 결과(정경희 외, 2018),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집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이 57.6%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돌봄, 식사, 생활편의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이 31.9%였으며,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은 10.3%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노인 돌

봄의 주체는 가족, 정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노인 스스로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을 원하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공격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재가서비스 시설은 2017년 3,168개였고, 2018년에는 3,494개, 2019년에는 4,82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2019년 만65세 이상 노인은 8,026,915명이었으며, 이 중 108,775명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추후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분야에서의 노인의 안전을 위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이인정, 2012; 보건복지부, 2018).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인권 문제는 최근까지 시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노인인권 인식 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재가서비스 종사자인 시설장과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인인권 인식의 하위분류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학대받지 않을 권리, 권리옹호 각각의 영역 수준을 중심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노인인권 인식 집단에 따라 노인인권 피해 또는 학대를 목격했을 때 대응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개념

인권(Human rights, 人權)이란 시대나 문화를 비롯하여 성별 또는 연령 등과 관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의미한다. 즉, 인권은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인이라

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볼 수 있다(권금주·임연옥, 2017). 그렇다고 하여 노인인권과 다른 연령집단에서 다뤄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인권과의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노인이라는 대상을 국한하여 인권의 주체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노인인권’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권중돈, 2012). 국가인권위원회(2018)에서 노인 인권을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노인 인권 실태 관련 조사와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권의 개념을 정의할 때, 노인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여라도 동등하게 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노인인권이 보장될 것을 강조하였다(홍송이 외, 2018).

이러한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문화된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우선 1948년 노인인권은 UN의 「노인권리선언(Declaration of Old Age Rights)」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노인권리선언」에서는 사회권을 중심으로 노인인권이 논의가 되었으며, 원조를 받을 권리, 의식주를 비롯한 노동에 대한 권리, 신체적·정신적 건강 돌봄에 관한 권리, 여가, 안전, 안심, 존경 등 10가지의 권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1991년 UN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제정하여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 5개 각각의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18개의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노인권리선언’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노인의 건강, 영양 소비자로서의 보호, 주거,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 고용, 교육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영역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고령화 사회로 도래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를 마련할 때, 기초적인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1982년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과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동향을 볼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내에는 노인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으며¹⁾, 「노인복지법」 제

1)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기본이념)에서는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능력에 따라 경제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동법에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과 참여 보장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동법 제1조의2(정의)에서 ‘노인학대’와 ‘노인학대 관련 범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이 학대피해로부터 안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장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룬 노인의 인권침해 영역과 관련이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6에 따르면, 노인이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등의 영역에서 학대 또는 피해를 입었거나, 유기, 방임 등의 학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재를 통해 노인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인권의 영역에 대하여 국제원칙, 법률,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권과 마찬가지로 인간존엄권(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자유권(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차별과 학대받지 않을 권리 등), 사회권(건강권, 환경권, 노동권 등) 그리고 청구권(법 절차적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영희 외(2017) 연구에서는 ‘건강·돌봄(신체건강, 정신건강, 돌봄권)’, ‘기본생활(의식주)’, ‘소득(빈곤예방 및 해소, 소득)’, ‘고용·노동(일자리 또는 고용기회, 근로환경, 가족 돌봄노동)’, ‘사회참여·통합(사회활동 참여, 세대교류 및 소통)’, ‘존엄·안전(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생명권, 안전권)’이라는 총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진행된 노인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에는 건강권, 존엄권, 안전권, 자기결정권, 권리구제의 5개 영역으로 노인인권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조사 기관에 따라 노인인권 영역별 세부내용이 상이하기는 하나 권금주와 임연옥(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인권의 5개의 영역을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학대받지 않을 권리, 권리옹호라는 5가지 영역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홍승이 외(2018) 연구에서는 차별받지 않을권리의 영역을 추가로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2. 재가서비스 현황과 확대

이 연구에서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한 영역을 노인이 돌봄을 받는 재가서비스²⁾ 분야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돌봄을 받는 노인의 경우 일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성인에 비하여 취약한 편이다. 이는 범죄피해 또는 학대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Gordon & Brill, 2001; Kosberg, 1988), 재가서비스를 제공 받는 노인의 인권침해와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분야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과 재가서비스 관련 분야는 일반적으로 형사사법학과 시큐리티관련 학계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우선 노인 돌봄을 위하여 마련된 공적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³⁾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급여의 대상은 일상생활 수준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판정되어 차등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내용으로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재가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복지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등이 가능한 재가급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2019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772,206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 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은 노인 670,810명에 비하여 볼 때, 2019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5.1%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는 노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록 시설과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재가서비스란,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가정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임병우 외, 2009).

3)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일컫는다(국민건강보험, 2020).

〈표 1〉 재가서비스 전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시설 및 인원 현황

재가 서비스	2017년		2018년		2019년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전체	3,168 (100.0%)	83,284 (100.0%)	3,494 (100.0%)	98,017 (100.0%)	4,821 (100.0%)	108,775 (100.0%)
주·야간 보호	1,086 (34.3%)	18,844 (22.6%)	1,312 (37.6%)	26,898 (27.4%)	1,816 (37.7%)	37,319 (34.3%)
단기보호	95 (3.0%)	633 (0.8%)	73 (2.1%)	477 (0.5%)	78 (1.6%)	369 (0.3%)
방문요양	1,009 (31.8%)	24,274 (29.1%)	1,051 (30.1%)	28,991 (29.6%)	1,513 (31.4%)	32,214 (29.6%)
방문목욕	588 (18.6%)	5,712 (6.9%)	650 (18.6%)	6,486 (6.6%)	942 (19.5%)	8,205 (7.5%)

시설 수 출처: 보건복지부(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이용인원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9).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 (2018).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 (2017). 2017 노인장기요양 보험통계연보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는 기존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2019년 12월 1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복지요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복지요구지원서비스’가 신설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노인 인권침해 또는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기에, 재가서비스 전체에 등록된 시설수와 만65세 이상 이용자의 수를 비롯하여 이에 해당하는 내용만 살펴보았다.

매년 재가서비스 등록 시설 수와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재가서비스 시설 수는 2017년 3,168개에서 2019년 4,821개로 증가하였으며, 이용 노인 역시 2017년에는 83,284명에서 2019년 108,775명으로 증가하였다.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7년 18,844명에서 2019년 37,31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높는데 2017년 24,274명이 이용하였고, 2019년에는 32,21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자는 2017년 5,712명, 2019년 8,205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단기보호 서비스는 시설수도 감소하였으며, 이용자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김홍수 외(2015)의 연구에서는 개방성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학대행위의 차이에서

도 학대행위 전체와 학대행위의 하위변인인 신체적, 언어·정서적, 재정적 학대, 방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학대행위의 관계에서 시설운영의 개방성에 대한 매개효과 검정을 한 결과 인권의식 전체와 학대행위 전체에 있어서 개방성이 유의미하였다.

배진희·정미순(2017)은 총 27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대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시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만족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노인학대 피해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만족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권금주(2017)의 연구에서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어떻게 개입하여 진행하는지 알고, 분석을 통해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8개의 사례 중 3개월 또는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시설은 총 5건이며, 모든 시설은 공통적으로 노인학대 징후 고지와 시정사항을 권고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요양시설 평가 항목에 학대 관련 영역이 확대되고, 이용 노인의 의견을 수렴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 또한, 노인학대예방교육,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1건의 노인학대 사례의 실적 점검이 아닌 인력, 시간, 자원 등의 투입규모에 따른 실적점검이 필요하다.

3. 확장된 합리적 행동이론(ETRA)

인식과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Fishbein과 Ajzen(1975)이 인간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주장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살펴보았다.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인간의 행동은 합리성에 의한 자발적인 통제하에서 형성된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으로부터 심리적 부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행동 의도(의향)는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ishbein & Ajzen, 1975). 또한, 신념(belief)과 평가(evaluation)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대와 기대에 따른 동기가 주관적인 규범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파악하였다(Ajzen & Fishbein, 1980).

즉, 합리적 행동이론이란, 사람이 특정 행동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태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이 될 때(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행동의도가 높아지면 자신이 인식하는 의도(행동의도)와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기에는 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통해 행동의 상당 부분을 예측하는 연구에 활용되지만, 모든 인간 행동은 자의적 통제하에 둘 수 없고, 충동적·감정적 행동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Ajzen, 1991). 특히, Armitage와 Conner(2001)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행동의도와 주관적 규범의 상관관계는 태도 등 타 변수에 비해 낮은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국내외 연구를 통해 과거 경험과 사전지식이 합리적 행동이론의 설명력을 높이는 주요변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김용중·김동진, 2011; 유주, 2012; 조원섭, 2014; 김기영·강진희, 2016; 이진우·손영근, 2017; Ajzen, 1991; Montano & Taplin, 1991).

과거 경험(past behavior)은 의도나 행동 자체의 지표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어왔다(고대영, 2012). 과거 경험이 많을수록 특정 행동을 하기까지의 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행동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친다(박진경, 2011; Ouellette & Wood, 1998). 사전지식은 행동의 주체가 특정 제품에 대한 과거 경험이나 친숙함의 정도를 볼 수 있으며(Duhan, Johnson, Wilcox & Harrell, 1997),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구분된다(Park & Lessig, 1981; Yi, 1993). 객관적인 지식은 행동의 주체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을 말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서연, 2017). 주관적 지식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행동 주체의 인식을 의미한다(유주, 2012). Chase와 Simon(1973)은 객관적 지식이 많을수록 새로운 정보를 더욱 잘 처리할 수 있고, Moorman, Diehl, Brinberg와 Kidwell(2004)은 주관적 사전지식이 있는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 가진 정보가 적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확장된 합리적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노인 인권 피해 또는 학대 신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연구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7년에 조사한 주간·야간, 단기보호 서비스 시설장과 시설직원을 조사한 11,527개의 자료와 2019년에 조사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시설장과 시설직원을 조사한 1,428개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5.0ver.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ANOVA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권인식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Mplus 7.0ver.을 활용하여 집단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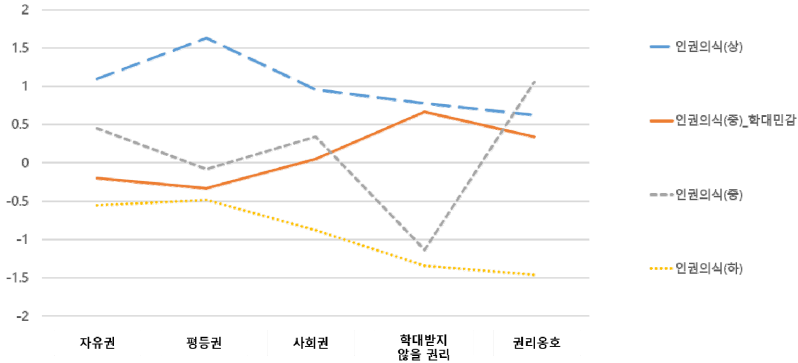
2. 노인 인권인식 집단 구분

노인 인권인식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학대받지 않을 권리, 권리옹호 5개의 영역에서 2017년과 2019년의 공통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유권은 7문항, 평등권 3문항, 사회권 3문항, 학대받지 않을 권리 7문항, 권리옹호 2문항으로 구성된 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로 '0=인권침해가 전혀 아님', '1=인권침해가 약함', '2=인권침해가 심함'으로 측정된 값을 연도별 인권 영역별로 합산한 다음 표준점수(standard score, z score)로 수정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5개의 노인 인권 영역변수를 활용하여 시설장과 시설직원을 각각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시설과 시설직원 각각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시설장은 4개 집단변수 결과 LRT값 1714.166이며, 유의수준 0.001이하에서 유의미한 집단으로 검증되었고, 시설직원은 LRT값 5090.848로 시설장과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0.001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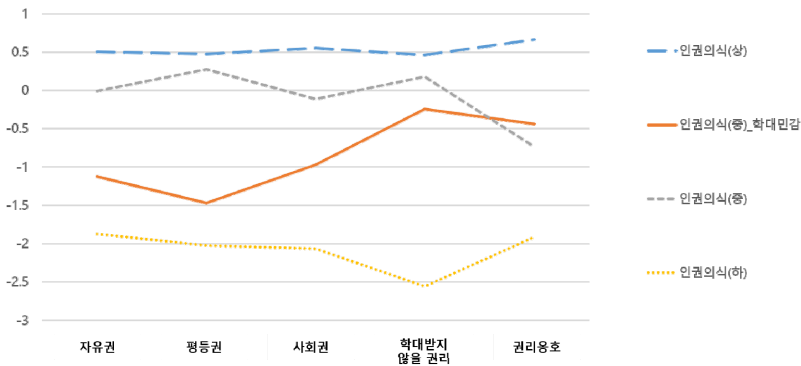
〈표 2〉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분류	잠재 집단 개수	df	AIC	BIC	Adj. BIC	LRT (p-value)	Entropy
시설장	1개	10	40577,443	40637,025	40605,252	-	
	2개	16	35844,133	35939,464	35888,627	4647,970 (0,0000)	0,970
	3개	22	33145,688	33276,769	33206,867	2452,936 (0,0000)	0,992
	4개	28	31491,545	31658,375	31569,409	1714,166 (0,0000)	0,944
시설직원	1개	10	143266,110	143338,309	143306,530	-	
	2개	16	99426,310	99541,828	99490,982	43073,173 (0,0000)	0,993
	3개	22	86978,861	87137,699	87067,786	12238,220 (0,0000)	0,965
	4개	28	82488,923	82691,080	82602,100	4422,002 (0,0007)	0,939

시설장과 시설직원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나타난 각 노인 인권 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1>,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시설장과 시설직원의 가장 큰 특징은 학대받지 않을 권리 영역에서 볼 수 있다. 인권인식을 크게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중위집단에서 학대받지 않을 권리 영역에서 큰 변동의 폭을 볼 수 있었다. 인권인식(상) 집단이 다섯 개 인권영역 인식 모두 고르게 높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인권인식(중) 학대민감 집단은 인권인식(상) 집단에 비하여 인권인식 수준이 낮으며 학대받지 않을 권리 영역에서만 비교적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이다. 인권인식(중) 집단은 인권인식(상) 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인권인식이 낮지만, 특히 학대받지 않을권리 영역의 인권인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집단이다. 인권인식(하) 전반적으로 4개 집단 중 인권인식이 5개 영역 모두 낮은 수준의 집단이다. 이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1〉 노인 인권인식 시설장 집단 비교



〈그림 2〉 노인 인권인식 시설직원 집단 비교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노인학대 대응태도이며, 노인학대 침해 및 학대를 목격할 경우 대응태도에 대하여 측정된 값을 활용하였다. ‘0=그냥 모른척함/무대응’으로 변수를 수정하였고, ‘학대행위자에게 학대 중단을 요구함,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 직원에게 보고하거나 시설의 절차에 따라 처리함, 신고함, 보호자에게 알림,

기타 등 대응을 할 경우 각각의 행위를 1점으로 하여 이를 합산하여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대응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노인 인권인식 집단 변수로 앞서 분석한 노인인권 인식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학대받지 않을권리, 권리옹호 5개 영역에서 동일한 측정변수의 값을 합산하여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4개의 집단으로 집단프로파일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인권인식(상)집단, 인권인식(중)학대민감집단, 인권인식(중)집단, 인권인식(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으로 보았으며, 직장특성 변수로는 현기관 근무경력과, 노인복지서비스 근무경력, 소속 시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노인인권교육 경험, 노인학대 지식수준, 부정적 신고태도 수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경우 성별은 '0=여성', '1=남성'으로 더미변수화하였고, 연령은 연속적으로 측정된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1=고졸 이하', '1=전문대학 진학 이상'으로 조작화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직장특성 변수로는 현기관근무경력과 노인복지서비스 근무경력에 개월로 계산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소속시설은 '0=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시설', '1=주야간, 단기보호시설'로 더미변수화하였다.

노인 인권교육 경험은 '0=교육 경험 없음, 1=교육 경험 있음'으로 더미변수화하였고, 노인학대 지식수준은 ① 노인학대의 개념에 대하여 알고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직원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사실을 알고 있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학대 신고기관이나 신고전화 번호 등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각각 문항별로 '0=모른다', '1=알고 있다'로 측정된 값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노인학대 및 노인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신고태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신고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시설장 Cronbach α =.819, 시설직원 Cronbach α =.825).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1) 시설장의 일반특성

2017년 시설장 2,481명과 2019년의 시설장 378명의 일반특성을 비교하여 각 항목 별로 구성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2017년 여성 시설장 57.0%, 2019년 여성 시설장 58.7%로 2017년에 비해 여성 시설장의 비율이 1.7%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에는 2017년 시설장의 평균 연령은 49.7세였으며, 2019년에는 평균 연령이 54.3세로 2017년에 비해 약 4.6세 정도 높아졌다. 2017년 시설직원의 연령은 50-59세가 전체의 39.9%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에는 60세 이상이 3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학력의 경우 2017년 시설장은 전문대 진학 이상 95.4%, 2019년 시설장은 94.7%로 나타난다. 현 기관 근무경력을 살펴보았을 때, 2017년 시설장은 약 50.1개월, 2019년 시설장은 약 평균 84.6개월로 나타나 2019년 시설장이 2017년 시설장보다 해당 기관에 근무기간이 약 35개월 정도 더 오래된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 시설장의 노인복지서비스 업무경력을 살펴보면 2017년 시설장은 평균 약 87.5개월, 2019년 시설장은 평균 약 103.2개월로 나타나 2017년 시설장보다 2019년 시설장이 노인복지서비스 업무경력도 약 16개월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도별 시설장의 일반 특성 분포

변수		2017년 시설장 (n=2,481)		2019년 시설장 (n=378)	
		n	(%)	n	(%)
성별	여성	1,414	57.0	222	58.7
	남성	1,050	42.3	156	41.3
	결측	17	0.7	-	-
연령	전체	M=49.7 (SD=9.7)		M=54.3 (SD=10.9)	
	30세 이하	390	15.7	45	11.9
	40세-49세	704	28.4	69	18.3
	50세-59세	991	39.9	128	33.9
	60세 이상	365	14.7	136	36.0
	결측	31	1.2	-	-

변수		2017년 시설장 (n=2,481)		2019년 시설장 (n=378)	
		n	(%)	n	(%)
학력	고교 졸업 이하	54	2.2	20	5.3
	전문대 진학 이상	2,366	95.4	358	94.7
	결측	61	2.5	-	-
현 기관 근무경력	전체	M=50.1 (SD=52.6)		M=84.6 (SD=42.4)	
	1년 미만	528	21.3	18	4.8
	1년~2년 미만	447	18.0	20	5.3
	2년~3년 미만	316	12.7	10	2.6
	3년~4년 미만	271	10.9	30	7.9
	4년~5년 미만	138	5.6	25	6.6
	5년 이상	781	31.5	275	72.8
노인복지 서비스 업무경력	전체	M=87.5 (SD=66.8)		M=103.2 (SD=59.6)	
	2년 미만	382	15.4	29	7.7
	2년~4년 미만	402	16.2	32	8.5
	4년~6년 미만	161	6.5	20	5.3
	6년~8년 미만	442	17.8	70	18.5
	8년~10년 미만	397	16.0	50	13.2
	10년 이상	697	28.1	177	46.8

2) 시설직원의 일반특성

2017년 시설직원 9,046명과 2019년의 요양보호사 1,050명의 일반특성을 비교하여 각 항목별로 비율이 나타난 내용은 <표 4>와 같다. 2017년 시설직원의 87.9%는 여성이며, 2019년 요양보호사 97.2%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즉, 2017년 보다 2019년 성비가 약 9.3%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직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17년 시설직원의 평균연령은 49.2세, 2019년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을 59.9세로 나타났으며, 2017년 시설직원보다 약 10살 정도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시설직원은 50-59세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요양보호사는 60세 이상이 5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시설직원은 30세 이하가 16.1%인데 반해 2019년 요양보호사는 30세 이하가 0.8%였으며, 40-49세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2017년 시설직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3.7%였으며, 2019년 요양보호사는 84.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7년 시설직원의 경우 전문대 진학 이상이 51.7%인데 반해, 2019년 요양보호사는 전문대 진학 이상

인 자는 14.6%로 나타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2017년 시설직원이 2019년 요양보호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기관 근무경력을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7년 시설직원 평균 근무 경력은 약 24.5개월, 2019년 요양보호사 평균 연력은 약 45.7개월로 대략 21개월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019년 요양보호사가 2017년 시설직원보다 현 기관 근무경력이 더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시설직원은 현 기관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이 40.7%로 가장 많았으나, 2019년 요양보호사의 경우 '5년 이상'이 3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 업무경력은 2017년 시설직원 평균 업무 경력은 약 42.4개월, 2019년 요양보호사 평균 업무 경력은 약 60.1개월로 약 1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시설직원은 노인복지 서비스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전체의 6.2%에 불과하지만, 2019년 요양보호사 중 '1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19.6%로 나타났다.

직위분포의 경우 2017년 시설직원의 57.0%, 2019년 요양보호사의 98.2%가 실무자로 나타났다. 2019년 요양보호사의 경우 대부분 실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로는 2017년 시설직원의 경우는 70.0%가 정규직이지만, 2019년 요양보호사는 25.5%가 정규직, 62.2%가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9년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사항으로는 2017년 시설직원은 요양보호사 49.3%이며, 2019년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99.1%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도별 시설직원의 일반 특성 분포

변수		2017년 시설직원 (n=9,046)		2019년 요양보호사 (n=1,050)	
		n	(%)	n	(%)
성별	여성	7,955	87.9	1,021	97.2
	남성	1,021	11.3	29	2.8
	결측	70	0.8	-	-
연령	전체	M=49.2 (SD=10.2)		M=59.9 (SD=7.5)	
	30세 이하	1,456	16.1	8	0.8
	40세-49세	2,359	26.1	83	7.9
	50세-59세	3,971	43.9	380	36.2
	60세 이상	1,117	12.3	579	55.1
	결측	143	1.6	-	-

변수		2017년 시설직원 (n=9,046)		2019년 요양보호사 (n=1,050)	
		n	(%)	n	(%)
학력	고교 졸업 이하	3,949	43.7	887	84.5
	전문대 진학 이상	4,673	51.7	153	14.6
	결측	422	4.7	10	1.0
현 기관 근무경력	전체	M=24.5 (SD=28.3)		M=45.7 (SD=38.0)	
	1년 미만	3,684	40.7	189	18.0
	1년~2년 미만	2,152	23.8	176	16.8
	2년~3년 미만	1,131	12.5	141	13.4
	3년~4년 미만	713	7.9	121	11.5
	4년~5년 미만	382	4.2	83	7.9
	5년 이상	984	10.9	340	32.4
노인복지 서비스 업무경력	전체	M=42.4 (SD=41.1)		M=60.1 (SD=47.2)	
	2년 미만	3,696	40.9	280	26.7
	2년~4년 미만	2,083	23.0	203	19.3
	4년~6년 미만	613	6.8	70	6.7
	6년~8년 미만	1,427	15.8	194	18.5
	8년~10년 미만	668	7.4	97	9.2
10년 이상	558	6.2	206	19.6	
직위분포	실무자	5,159	57.0	1,031	98.2
	중간관리자	1,117	12.3	16	1.5
	상급관리자	274	3.0	1	0.1
	기타	904	10.0	2	0.2
	결측	1,592	17.6	-	-
고용형태	정규직	6,329	70.0	268	25.5
	계약직	2,423	26.8	653	62.2
	기타	44	0.5	129	12.3
	결측	228	2.5	-	-
자격사항	요양보호사	2,003	49.3	1,041	99.1
	사회복지사	4,462	22.1	5	0.5
	간호사	211	2.3	2	0.2
	간호조무사	1,871	20.7	1	0.1
	물리치료사	89	1.0	-	-
	기타	147	1.6	1	0.1
	결측	263	2.9	-	-

2. 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인권인식 집단별 특성의 차이

1) 시설장의 노인 인권인식 집단별 특성의 차이

노인재가복지시설 시설장의 노인 인권인식 및 집단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chi^2=124.211$, $p<.001$), 주·야간 인권인식(중) 학대민감집단이 전체의 4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시설 방문 인권의식(중)은 0.0%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성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662$, $p<.05$). 인권인식(고)집단과 인권인식(중)집단의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인권인식(중) 학대민감집단과 인권인식(저)집단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인권인식 집단에 따라 연령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982$, $p<.05$). 인권인식(중)집단이 48.7세로 가장 평균연령이 어렸으며, 다른 집단은 비슷한 평균연령을 볼 수 있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인식(중) 학대민감 집단의 전문대 진학 이상 시설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재가 서비스 현 기관 근무경력과 노인복지 시설 전체 근무경력은 노인 인권인식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은 노인 인권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2.507$, $p<.05$), 노인학대 지식 수준도 시설장의 노인 인권 집단별 구분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268$, $p<.01$). 부정적 대응태도 인식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노인 인권 집단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26.593$, $p<.001$), 인권인식(고)집단과 인권인식(중)집단의 경우 부정적 대응태도도 평균 점수가 20.0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 인권(저)집단의 부정적 대응태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응수준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노인 인권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1.362$, $p<.001$) 인권인식(고)의 대응수준이 1.8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5〉 시설장의 노인 인권인식 집단별 특성의 차이

변수		인권인식(고) (<i>n</i> =282)		인권인식(중) 학대민감 (<i>n</i> =1,193)		인권인식(중) (<i>n</i> =625)		인권인식(저) (<i>n</i> =381)		통계량(<i>p</i>)
		<i>n</i>	(%)	<i>n</i>	(%)	<i>n</i>	(%)	<i>n</i>	(%)	
시설	주야간	381	15.4	1,193	48.1	282	11.4	625	25.2	$\chi^2=124.211^{***}$
	방문	135	35.7	147	38.9	0	0.0	96	25.4	
성별	남자	221	18.3	546	45.3	143	11.9	296	24.5	$\chi^2=9.662^*$
	여자	294	18.0	784	47.9	138	8.4	420	25.7	
연령		M=50.73 (SD=10.7)		M=50.38 (SD=9.7)		M=48.67 (SD=10.5)		M=50.53 (SD=9.7)		F=2.982*
교육수준	고졸이하	21	28.4	29	39.2	7	9.5	17	23.0	$\chi^2=5.439$
	전문대 진학 이상	488	17.9	1,281	47.0	267	9.8	688	25.3	
현기관 근무경력		M=55.7 (SD=46.4)		M=55.1 (SD=56.3)		M=50.8 (SD=48.2)		M=54.4 (SD=51.7)		F=0.600
노인복지 시설 근무 경력		M=82.7 (SD=57.6)		M=90.5 (SD=68.7)		M=88.7 (SD=63.7)		M=93.0 (SD=67.5)		F=2.592
인권 교육	無	32	22.1	69	47.6	11	7.6	33	22.8	$\chi^2=2.507^*$
	有	480	17.9	1,255	46.8	269	10.0	677	25.3	
노인학대 지식수준		M=2.9 (SD=0.5)		M=2.9 (SD=0.3)		M=2.9 (SD=0.4)		M=2.9 (SD=0.3)		F=5.267**
부정적 대응태도		M=20.0 (SD=5.4)		M=18.8 (SD=5.7)		M=20.0 (SD=5.1)		M=17.4 (SD=5.5)		F=26.593***
대응수준		M=1.8 (SD=1.0)		M=2.1 (SD=1.2)		M=2.1 (SD=1.2)		M=2.1 (SD=1.2)		F=11.362***

* $p<0.05$, ** $p<0.01$, *** $p<0.001$

2) 시설직원의 노인 인권인식 집단별 특성의 차이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노인재가시설 시설직원의 노인인권 인식 집단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노인인권 인식 집단별 시설특성에 따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67.749$, $p<0.001$). 주·야간 인권인식(고) 집단이 전체의 6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야간 인권인식(중) 집단이 전체의 7.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권 인식에 따른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X^2=15.253$, $p<.01$), 남성은 인권인식(고) 집단이 761.2%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인권인식(고) 집단이 61.1%로 가장 많았다. 연령의 경우 인권인식(중)학대민감 집단의 평균연령이 52.5세로 가장 많았으며, 인권인식(중) 집단이 49.0세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노인인권 인식 집단별 연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볼 수 있었다($F=32.405$, $p<.001$).

시설직원의 노인인권 인식 집단별 교육수준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20.423$, $p<.001$). 인권인식(고) 집단의 고졸 이하 분포가 57.8%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진학 이상의 비율도 64.8%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인권 인식집단별 현재의 기관 근무경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복지 시설 근무 경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879$, $p<.05$). 인권인식(중)학대민감 집단이 46.0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인권인식(저) 집단이 42.1개월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권 교육 경험 유무는 노인인권 인식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X^2=36.657$, $p<.001$), 노인학대 지식수준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6.907$, $p<.001$). 노인학대 지식수준의 노인인권 인식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인권 인식(중)학대민감 집단이 2.6점으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인권인식(고) 집단이 2.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대응태도는 노인인권 인식 집단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148.073$, $p<.001$), 부정적 대응태도 수준이 인권인식(중)학대민감 집단에서 가장 높은 21.8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인 인권 피해 및 학대를 목격할 경우 대응수준은 인권인식(고) 집단이 1.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권인식(중)학대민감 집단과 인권인식(저) 집단이 각각 1.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인권 피해 및 학대에 대한 대응수준은 노인인권 인식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볼 수 있었다($F=63.524$, $p<.001$).

〈표 6〉 시설직원의 노인인권 인식 집단별 특성의 차이

변수		인권인식(고) (<i>n</i> =282)		인권인식(중) 학대민감 (<i>n</i> =1,193)		인권인식(중) (<i>n</i> =625)		인권인식(저) (<i>n</i> =381)		통계량(<i>p</i>)
		<i>n</i>	(%)	<i>n</i>	(%)	<i>n</i>	(%)	<i>n</i>	(%)	
시설	주야간	5,563	61.5	1,849	20.4	666	7.4	968	10.7	$\chi^2=67.749^{***}$
	방문	601	57.2	168	16.0	82	7.8	199	19.0	
성별	남자	643	61.2	246	23.4	69	6.6	92	8.8	$\chi^2=15.352^{**}$
	여자	5,487	61.1	1,759	19.6	677	7.5	1,053	11.7	
연령		M=50.0 (SD=10.6)		M=52.5 (SD=9.7)		M=49.0 (SD=10.8)		M=52.4 (SD=9.3)		F=32.405 ^{***}
교육수준	고졸이하	2,796	57.8	929	19.2	445	9.2	666	13.8	$\chi^2=120.423^{***}$
	전문대 진학 이상	3,128	64.8	1,008	20.9	269	5.6	421	8.7	
현기관 근무경력		M=26.7 (SD=30.0)		M=29.3 (SD=32.4)		M=26.3 (SD=30.2)		M=25.8 (SD=29.8)		F=2.268
노인복지 시설 근무 경력		M=45.0 (SD=42.7)		M=46.0 (SD=43.6)		M=42.8 (SD=40.1)		M=42.1 (SD=41.5)		F=2.879 [*]
인권 교육	無	438	51.8	217	25.7	81	9.6	110	13.0	$\chi^2=36.657^{***}$
	有	5,618	62.1	1,762	19.5	645	7.1	1,015	11.2	
노인학대 지식수준		M=2.8 (SD=0.5)		M=2.6 (SD=0.8)		M= 2.7 (SD=0.7)		M=2.7 (SD=0.6)		F=66.907 ^{***}
부정적 대응태도		M=18.9 (SD=5.9)		M=21.8 (SD=5.4)		M=21.5 (SD=5.4)		M=18.6 (SD=5.5)		F=148.073 ^{***}
대응수준		M=1.5 (SD=1.0)		M=1.2 (SD=0.9)		M=1.3 (SD=0.9)		M=1.2 (SD=0.9)		F=63.524 ^{***}

p*<0.05, *p*<0.01, ****p*<0.001

3. 노인재가시설 종사자의 노인 인권인식이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재가시설 종사자의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표 7>과 같다. 시설장의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시 신고 대응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적합도는 $F=7.408$ 로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유의미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설명력은 3.0%로 나타

났다. 시설직원의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적합도는 $F=41.889$ 로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유의미하여 시설장 모델과 마찬가지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설명력은 5.1%로 나타났다.

노인 인권인식 집단별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설장은 인권인식(상)집단이 인권인식(중)학대민감 집단보다 대응태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0.262, p<.001$), 인권인식(중)집단이 인권인식(중)학대민감 집단보다 대응태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020, p<.001$). 시설직원의 경우 인권인식(상)집단이 인권인식(중)학대민감 집단보다 대응태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218M,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시설장($B=0.138, p<.01$)과 시설직원($B=0.094, p<.01$)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태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은 연령이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태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시설직원은 연령이 낮을수록 대응태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007, p<.001$). 교육수준은 시설장과 시설직원 모두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 시 대응태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종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장이 주야간 및 단기보호 시설장보다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태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0.142, p<.001$). 현기관 근무경력은 시설장과 시설직원 모두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태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복지기관 근무경력에 시설직원의 경우에만 근무경력이 길수록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시 대응태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0.001, p<.05$).

노인 인권교육 경험이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 시 대응태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시설직원에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0.114, p<.01$), 노인 인권교육경험이 있는 시설직원이 경험이 없는 직원보다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 시 대응태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응태도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변수	시설장			시설직원			
	B	SE	t	B	SE	t	
시설종류*	-0.142	0.035	-4.023***	0.026	0.018	1.471	
인권 인식*	상	-0.262	0.066	-3.945***	0.218	0.041	5.344***
	중	0.020	0.083	0.239***	0.044	0.045	0.987
	하	-0.058	0.059	-0.987	-0.073	0.049	-1.476
성별	0.138	0.048	2.877**	0.094	0.034	2.785**	
연령	-0.001	0.002	-0.369	-0.007	0.001	-6.221***	
교육수준	0.069	0.148	0.466	0.041	0.023	1.758	
현기관 근무경력	-0.001	0.001	-1.359	0.001	0.000	1.794	
노인복지기관 근무경력	0.001	0.000	1.792	-0.001	0.000	-2.426*	
노인 인권 교육경험*	0.104	0.108	0.963	0.114	0.038	2.971**	
노인학대 지식수준	0.158	0.072	2.201*	0.058	0.018	3.176**	
부정적 대응태도	-0.013	0.004	-3.093***	-0.025	0.002	-13.366***	
모델 설명력	N=2,473 R ² =0.035(adj R ² =0.030) Durbin-Watson=1.938 F=7.408***			N=9,089 R ² =0.052(adj R ² =0.051) Durbin-Watson=1.543 F=41.889***			

참조변수: 시설종류 0=주간·야간 및 단기보호, 인권인식 준거집단=인권인식(중) 학대민감
성별 0=여자, 노인 인권교육 경험 0=없음,

* $p<0.05$, ** $p<0.01$, *** $p<0.001$

노인학대 지식수준은 시설장($B=0.158, p<0.05$), 시설직원($B=0.058, p<0.01$) 모두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 시 대응태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학대 지식수준이 높은 시설장과 시설직원은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 시 대응태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대응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시설장($B=-0.013, p<0.001$), 시설직원($B=-0.025, p<0.001$)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시 대응태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이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를 목격했을 때의 대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하여 시설장과 시설직원의 노인 인권인식 집단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노인 인권인식(상) 집단, 노인 인권인식(중) 학대민감 집단, 노인 인권인식(중) 집단, 노인 인권인식(하) 집단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노인 인권인식 집단이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설장과 시설직원의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시설직원의 경우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학대받지 않을 권리, 권리 옹호 5개의 영역이 모두 높은 노인 인권인식(상) 집단이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권리옹호 노인인권 인식 수준은 낮으며, 학대받지 않을 권리 영역이 높은 노인 인권인식(중) 학대민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장의 경우에는 노인 인권인식(중) 학대민감 집단이 노인 인권인식(상) 집단보다 노인인권 침해 및 목격 시 대응태도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장의 경우에는 학대받지 않을 권리영역에서만 민감한 집단보다는 노인 인권인식(중) 집단의 시설장이 노인인권 침해 및 목격 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설직원의 경우에는 인권영역이 높은 집단의 노인인권 침해 및 목격 시 대응태도 수준이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시설장에서도 인권인식(중) 집단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하계도 시설장의 경우 상이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학대받지 않을 권리 영역의 점수가 노인 인권인식(상) 집단과 노인 인권인식(중) 학대민감 집단과의 차이가 다른 인권 영역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노인 인권인식이 높을수록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 시 대응태도가 적극적이며, 특히 학대받지 않을 권리 영역이 민감할 경우에는 더욱 대응태도가 적극적일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장의 남녀 비율은 여성이 40% 수준이고, 시설직원은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장과 시설직원 모두 재가서비스 남성 종사자가 여성 종사자보다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태도가 남성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시설직원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더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나타냈다. 즉, 전반적으로 노인재가시설 서비스 종사자가 여성의 비율이 많은데 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시 대응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인식 수준을 성별에 따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직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종사자의 연령에 따라라도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을 대응할 경우에 본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인식, 직업적 태도 등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육수준은 노인인권 침해 및 목격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시설직원의 경우에는 노인 인권교육 경험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노인 인권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노인 인권교육 시 학대와 관련된 지식을 교육하는데, 학대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 시에 시설장과 시설직원 모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 인권교육의 효과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종사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볼 때, 노인 인권교육을 통해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학대를 예방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신고와 같은 대응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설장, 시설직원 모두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대응태도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고와 같은 대응태도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노인 인권인식이 노인 인권침해 및 목격 시 대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인식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이 연구에서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기 때문에 노인 인권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근무경력에 따라 노인 인권교육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매년 같은 교육을 실시할 경우 노인 인권인식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입 노인인권 인식교육과 근무연수에 따라 중급, 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노인 인권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교육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앞서 교육실태 점검이 선제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 인권교육을 시설의 자체교육으로 운영하는 경우 인권교육의 내용 및 운영의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밖에 인권교육을 실

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시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시설장이 시설 자체적으로 노인 인권 교육 수강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인 인권교육에 인권침해 및 학대 목격 시 신고 등의 대응을 할 경우 부정적 인식을 낮추기 위하여 대응하는 주체 시설장과 직원이 대응하는 자신의 행동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정부기관과 대응체계의 신뢰감을 형성시켜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인권침해 및 학대 대응체계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던 노인 인권 인식집단별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노인 인권교육에 대한 자세한 고찰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대영. (2012).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외식소비자의 건강메뉴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패밀리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금주. (2017). 생활시설 노인학대 사례 개입과정 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7(2), 430-433.
- 권금주, 임연옥. (2017).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권중돈. (2012). 인권과 노인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김기영, 강진희. (2016). 확장된 합리적 행동이론(ETRA)과 휴리스틱(Heuristics)이론을 적용한 커피전문점 선택행동 연구. 관광연구저널, 30(10), 83-99.
- 김용중, 김동진. (2012). 확장된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소비자의 친환경 레스토랑 선택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8(2), 45-62.
- 김홍수, 정재필, 최명혜. (2015).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이 학대 행위에 유해 효과에서 시설 운영의 개방성의 효과. 노인 의료 복지 연구, 7(1), 127-138.
- 박진경. (2011). 여가행동을 예측하는 모형 탐색: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관광연구, 26(4), 237-255.
- 배진희, 정미순. (2017). 노인요양 시설내 학대경험이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591-599.
- 유 주. (2012).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을 이용한 중국유학생의 한국국내관광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 사전지식, 위험지각과 관광동기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정. (2012).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 수준과 우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4), 31-65.
- 원영희, 최혜지, 김주현, 김성호. (2017).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임병우, 주경희, 조성은. (200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43, 353-380.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원섭(2014). 확장된 계획행동이론(IPB)을 활용한 커피전문점 행동의도 연구. 관광연구, 28(6), 161-179.

- 홍송이, 이보영, 최효진, 심혜인. (2018). 2018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
- Castle, N. G. (2012). Resident-to-resident abuse in nursing homes as reported by nurse aide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4(4), 340-356.
- Duhan, D. F., Johnson, S. D., Wilcox, J. B., & Harrell, G. D. (1997). Influences on consumer use of word-of mouth recommendation source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5(4), 283-296.
- Fishbein, M., and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 Fishbein, M., & Ajzen, I.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N.J.: Prentice-Hall.
- Gordon, R., & Brill, D. (2001). The abuse and neglect of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4, 183-197.
- Kosberg, J. I. (1988). Preventing elder abuse: I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prior to placement decisions. *Gerontologist*, 28(1), 43-50.
- Montano, D. E., & Taplin, S. H. (1991). A test of an expanded theory of reasoned action to predict mammography particip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32(6), 733-741.
- Moorman, C., Diehl, K., Brinberg, D. & Kidwell, B. (2004), Subjective Knowledge, Search Locations, and Consumer Cho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3), 673-680.
- Ouellette, J. A., & Wood, W. (1998). Habit and intention in everyday life: The multiple processes by which past behavior predicts futur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4, 54-74.
- Park, C. W., & Lessing, P. V. (1981). Familiarity and its impact on consumer biases and heuristic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2): 223-230.
- Yi, Y. (1993). Contextual priming effects in print advertisements: The moderating role of prior knowledge. *Journal of advertising*, 22(1), 1-10.

【Abstract】

Exploratory Study on Recognition of Elderly Human Rights of Employees in Local Elderly Welfare Facilities^{*}

Hye-In, Sim^{**} · Song-Iee, Hong^{***}

Human right issue in elderly care service has been discussed by mainly focusing on the faciliti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scale of in-home service will be continuously expanded in the future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use of in-home service, the increase of healthy elderly people, the spread of the culture that emphasizes independent life, and the emphasis on the important of community car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discussion on elderly human right in the in-home service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case of in-home service, not facilities,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 prevent elderly human right violation and abuse. Therefore, this study requires to ver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sponse attitude when witnessing any harms or abuse of elderly human rights by the employees. Additionally, the study tried to verify the effect of elderly human right recognition of in-home service employees on the attitude of reporting any harms or abuse of elderly people by dividing groups based on latent profile analysis (LPA).

11,527 data surveyed with the director and employees of day / night and short-term protection service facilities conducted in 2017 and 1,428 data surveyed with the director and employees of visiting nursing and visiting bathing service facilities conducted in 2019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Central Elder Protection Agency were used and analyzed by using SPSS 25.0ver. In addition, Mplus 7.0ver. was used and group profile analysis wa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3081040)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t Dongguk University(Seoul)(First Author)

*** Professor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Dongguk University(Seoul)(Corresponding Author)

conducted to classify the groups of human rights recognition. The study tried to prepare policy-level suggestions to prevent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and abuse that can be occurred in in-home service facilities based on these empirical studies.

Keywords: Elderly human right, Right not to be Abused, Elder Abuse, Response Attitude, In-Home Service.